



심사보고서

의안명	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의안번호	제15호
심사일자	2026. 9. 2.



위원장 박인섭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
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5
------	----

2026년 9월 2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28. 이강무 의원
나. 회부일자: 2026. 9. 1.
다. 상정일자: 2026. 9. 2. 제3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설명 요지 (이강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을 비롯하여 인사 채용 및 조직 운영 관련 공단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의 일련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하고,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를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,
-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제출된 조치결과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면밀히

살펴보고, 적절한 관리·감독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과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활동기간: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
- 구성인원: 13명 이내
- 활동내용
 -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채용, 조직 운영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,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·감독권한 행사 여부 조사
 -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행 실태 점검 및 공단 운영의 올바른 운영 방향 제시
- 구성방법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

다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2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)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10조(특별위원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강혜진)

-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6년 8월 28일 이강무 의원이 발의하여, 의안번호 제15호로 접수,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, 지난 2026년 8월 26일 제334회

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에 따라 발의된 **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**이 송파구의회의원 2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해당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**본 안건의 취지**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채용 및 조직 운영 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고,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공단 운영 전반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,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.

○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단의 인사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도출된 제도 개선 방안을 향후 공단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, 구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이상과 같이 **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**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·제출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드립니다.

4. 질의 및 답변(요지)

【질의】 박성희 위원

○ 지난 대수에서 리클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,

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원활한 조사가 어려웠음.
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?

【답변】 이강무 의원

○ 증인을 채택했을 때,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, 과태료를 내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【답변】 오미자 사무국장

○ 제도상으로는 이강무 의원님 답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 뿐인 것은 사실임. 그러나,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, 리클린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됨.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